

## 林産物標準出荷包裝規格

<b>산 립 청</b>	<b>임산물 표준출하 포장규격 밤, 건조대추, 생표고버섯, 마른취나물</b>	개정 : 1998. 1. 15 산림청 고시 제 1998-1호
--------------	--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밤, 건대추, 생표고버섯, 마른취나물의 표준출하규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8년 1월 일

임산물 표준출하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밤의 포장규격중 1kg단량의 P.E포장규격, 4kg단량의 미장골판지 포장규격, 8kg단량의 골판지 포장규격 및 20kg단량의 골판지 포장규격을 신설한다.

밤의 포장규격중 5kg중량의 골판지 포장규격 및 15kg중량의 골판지 포장규격을 폐지한다.

밤의 포장규격중 40kg중량의 P.P포장규격 "930±30×530"을 "1000×575"로 하며, 외치수여유분을 "길이를 10% 범위에서 가감한다." 로 따로 규정한다.

건대추의 포장규격중 200g중량의 P.E포장규격, 2kg·4kg단량의 미장골판지 포장규격 및 20kg중량의 골판지 포장규격을 신설한다.

건대추의 포장규격중 1kg단량의 마닐라판지 포장규격을 폐지한다.

생표고버섯의 포장규격중 2kg중량의 골판지포장규격 "275×195×175±10"을 "412×275×200"로 하며, 외치수여유분을 "높이는 10%범위에서 가감한다" 로 따로 규정하고, 파열강도 "12"를 "8"로 한다.

마른 취나물의 포장규격중 100g및 200g중량의 마닐라판지 포장규격을 폐지한다.

마른취나물의 포장규격중 100g중량의 P.E포장규격 "270±30×200×0.023"을 "300×200×0.05"로, 외치수여유분을 "길이를 10% 범위에서 가감한다"로 따로 규정하고, 200g중량의 P.E포장규격 "350±30×250×0.03"을 "340×190×0.05"로, 외치수여유분을 "길이를 10% 범위에서 가감한다"로 따로 규정한다.

마른 취나물의 포장규격중 5kg 및 10kg 중량의 골판지 규격을 신설한다.

**부 칙**

이 규격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현행 포장재 규격대비 개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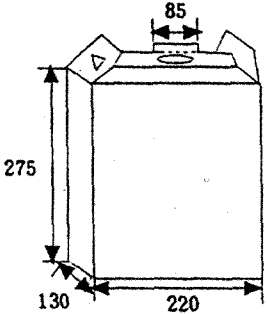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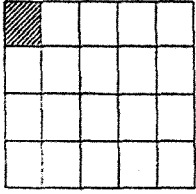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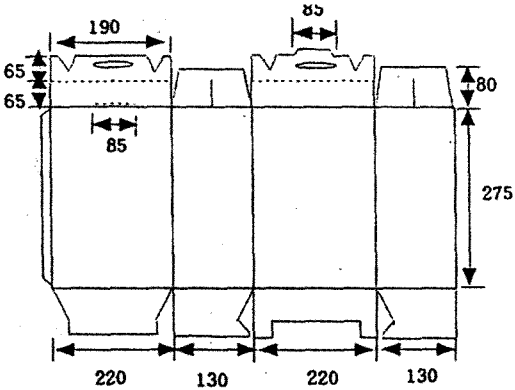
품목	현행						개정(안)					
	중량 (kg)	포장재 종류	포장치수 (mm) <길이×너비×높이>	파열 강도 kgf/cm <sup>2</sup>	압축 강도 (kgf)	발수도	중량 (kg)	포장재 종류	포장치수 (mm) <길이×너비×높이>	파열 강도 kgf/cm <sup>2</sup>	압축 강도 (kgf)	발수도
밤		<신>	<살>				1	P, E대	290±10% ×220×0.03	-	-	-
		<신>	<살>				4	미장골판지 양면2종	220×130±5% ×275	8	200	R2
	5	미장골판지 양면 2종	250×130 ×270±20	12	-	R2		<폐> <지>				
		<신>	<살>				8	골판지 이중양면2종	366×220 ×170±5%	10	300	R2
	15	골판지 이중양면2종	385×310 ×250±10	14	300	R2		<폐> <지>				
		<신>	<살>				20	골판지 이중양면2종	550×366 ×190±5%	12	450	R2
	40	P, E대 ×530	930±30	-	-	-	40	P, E대	1,000±10% ×575	-	-	-
개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다수 유통되고 있는 1kg, 4kg, 8kg 중량 신설</li> <li>○ 유통량이 적은 5kg, 15kg 중량은 폐지</li> <li>○ 대포장 및 외포장 상자의 필요성에 의해 20kg 중량 신설</li> <li>○ 물류표준화 모듈치수에 맞도록 포장치수 규정</li> <li>○ 포장치수 여유분 규정을 국립농산물검사소의 요청에 의하여 확정적인 치수개념(mm)에서 유통성 있는 비율개념(%)으로 전환</li> <li>○ 골판지상자 파열강도를 개정된 KS 규격에 맞게 규정</li> </ul>											
건대추		<신>	<살>				0.2	P, E대	225±10% ×175×0.03	-	-	-
	1	마닐라판지	190×80 × 200±20	7.6	-	R2		<폐> <지>				
		<신>	<살>				2	미장골판지 양면2종	215×125× 240±10%	8	200	R2
		<신>	<살>				2	미장골판지 양면2종	300×250× 180±10%	8	200	R2
		<신>	<살>				2	골판지 이중양면2종	650×450× 250±10%	10	450	R2
개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포장 및 대(외)포장의 필요성으로 0.2kg 및 20kg 중량 신설</li> <li>○ 유통량이 적은 1kg 중량은 폐지하고, 유통량이 많은 2kg, 4kg 신설</li> <li>○ 물류표준화 모듈치수에 맞도록 포장치수 규정</li> <li>○ 포장치수 여유분 규정을 유통성을 제고하기 위해 % 개념으로 전환</li> <li>○ 골판지상자 파열강도를 개정된 KS 규격에 맞게 규정</li> </ul>											

현행 포장재 구격대비 개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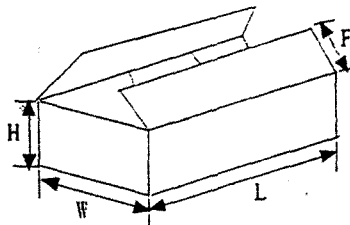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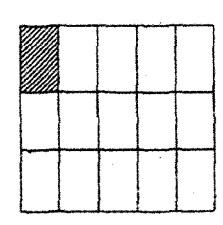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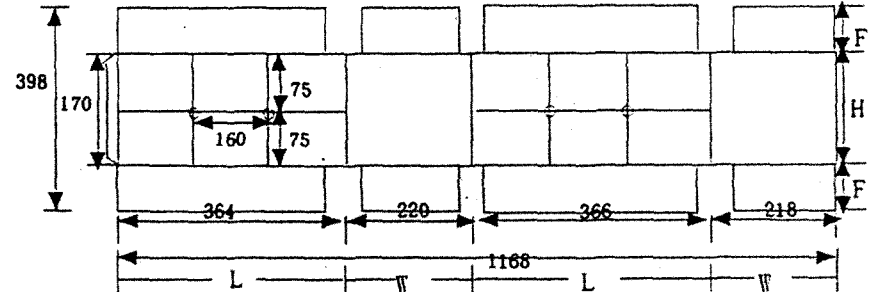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품목	중량 (kg)	포장재 종류	포장치수(mm) 〈길이×너비×높이〉	파열 강도 kgf/cm <sup>2</sup>	압축 강도 (kgf)	발수도	중량 (kg)	포장재 종류	포장치수(mm) 〈길이×너비×높이〉	파열 강도 kgf/cm <sup>2</sup>	압축 강도 (kgf)	발수도
생표고 버섯	2	골판지 양면1종	275×195 ×175±10	8	200	R2	2	골판지 양면1종	412×275 ×120±10%	6.5	200	R2
	4	골판지 양면2종	330×220 ×200±10	12	250	R2	4	골판지 양면2종	412×275 ×200±10%	8	250	R2
개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류표준화 모듈치수에 맞도록 포장치수 규정</li> <li>○ 포장치수 여유분 규정을 융통성을 제거하기 위해 % 개념으로 전환</li> <li>○ 골판지상자 파열강도를 개정된 KS 규격에 맞게 규정</li> </ul>											
마른 취나물	Q.1	마닐라 판지	200×200 ×50±10	-	-	R2		〈폐 지〉				
	Q.2	마닐라 판지	333×200 ×50±10	-	-	R2		〈폐 지〉				
	Q.1	P. E대	270±30 ×200×0.03	-	-	-	Q.1	P. E대	300±10% ×200×0.05	-	-	-
	Q.2	P. E대	350±30× 250×0.03	-	-	-	Q.2	P. E대	340±10% ×190×0.05	-	-	-
			〈신 설〉				5	골판지 양면2종	628×471× 300±10%	8	250	R2
			〈신 설〉				10	골판지 이중양면1종	628×471× 320±10%	10	300	R2
개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량이 적은 Q.1kg, Q.2kg 상자 규격 폐지</li> <li>○ 외포장 상자의 필요성에 의해 5kg, 10kg 규격 신설</li> <li>○ Q.1kg, Q.2kg P. E대 규격을 외포장규격에 맞게 개정</li> <li>○ 마른취나물 줄기에 의한 파손우려로 두께 조정(평창산채시험장 요청)</li> <li>○ 물류표준화 모듈치수에 맞도록 포장치수 규정</li> <li>○ 포장치수 여유분 규정을 융통성을 제거하기 위해 % 개념으로 전환</li> </ul>											

* 밤, 1kg, P.E대	
구 분	포 장 규 격
포장치수(mm)	1. 겉포장 외치수 : 290(길이) × 220(너비) × 0.03(두께) 2. 외치수 여유분 : 길이를 10% 범위에서 가감한다.
포장 재료	1. P.E필름대 : KSM 3509(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중 1종인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한다. 2. 모양 : 모양은 튜브상을 사용하지만 부득이 쉬트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간면을 완전하게 열봉합하여야 한다. 3. 품질 : P.E필름대의 강도는 두께 0.03mm이상, 인장강도 160kgf/m <sup>2</sup> 이상, 신장율 200% 이상, 인열강도 55kgf/cm(보통) 및 50kgf/cm(접은곳)이상으로 한다. 또한 필름은 무착색의 것을 표준으로 하되, 기타의 색상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4. 식품위생법에 다른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포장 방법	1. 내용물을 담은후 윗부분의 봉합은 10mm이상 떨어진 부분을 열봉합하거나, 묶는 경우에는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묶어야 한다. 2. 열봉합은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열봉합 강도가 필름 인장강도 이상이어야 하며, 끝에서부터 10mm떨어진 부분을 열봉합한다.
시험 방법	1. KSM 3001(폴리에틸렌의 기계적성질 시험방법) 2. KSM 3503(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 3. KSM 3509(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4. 식품위생법 제12조(식품·첨가물 등의 공진)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포장 설계 (단위:MM)	<P.E필름대의 전개도> 1. 원통형 <span style="margin-left: 200px;">2. 몸통 접착형(T형)</s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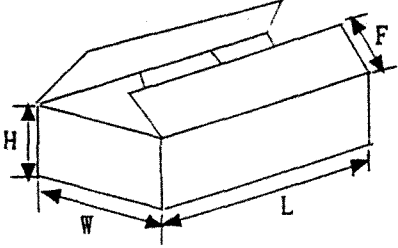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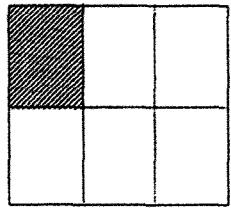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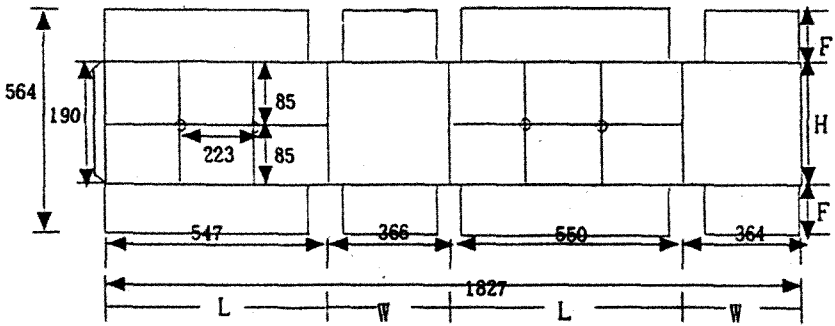
\* 밤, 4kg, 미장골판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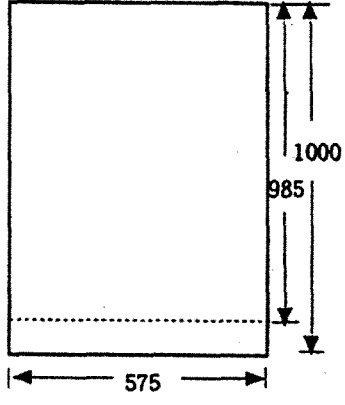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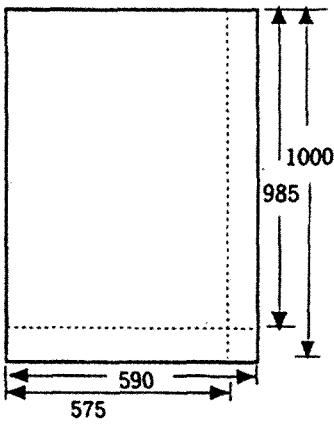
구 분	포 장 규 격
포장치수(mm)	1. 겉포장 외치수 : 220(길이)×130(너비)×275(높이) 2. 외치수 여유분 : 너비를 5% 범위에서 가감한다.
포장 재료	1. 포장재 : KSA 1502(외부포장용 골판지)에 규정된 양면골판지 2중, 파열강도 8kgf/cm <sup>2</sup> 이상, 압축강도 200 kgf 이상, 수분함량 10±2%, 발수도 R2이상으로 한다 2. 표지 : 읍색인쇄등 방법으로 백색 마닐라판지에 인쇄하여 편면골판지에 합지한다. 3. 골형태 : E골을 표준으로 하지만, 거래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A골 및 B골을 사용할 수 있다. 4.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포장 방법	1. 상자의 포장형태 : 아래포장설계와 같이 손잡이가 있는 특수형태를 사용한다. 2. 내용물 : 상자내의 내용물은 Bulk상태로 주입한다.
시험 방법	1. 겉포장 : KSM 7082 (종이 및 판지의 고압파열강도 시험방법) KSM 7057 (종이 및 판지의 발수도 시험방법) KSM 7023 (종이 및 판지의 수분 시험방법) 2. 식품위생법 제12조(식품·첨가물등의 공전)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포장 설계 예시 (단위:MM) 적재 모형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1. 상자의 입체도</p>  </div> <div style="width: 45%;"> <p>3. 적재 모형</p>  </div> </div> <p>2. 상자의 전개도</p> 

\* 밤, 8kg(P.E 1kg×8), 골판지상자

구 분	포 장 규 격
포장치수(mm)	1. 겹포장의치수 : 366(길이)×220(너비)×170(높이) 2. 외치수여유분 : 높이를 5% 범위에서 가감한다.
포장 재료	1. 겹포장 : KSA 1502 (외부포장용 골판지)에 규정된 이중양면골판지 2종, 파열강도 10kgf/cm <sup>2</sup> 이상, 압축강도 300 kgf이상, 변형량 20 mm, 수분함량 10±2%, 발수도 R2 이상으로 한다. 2.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포장 방법	1. 겹포장 상자 : KSA 1003 (골판지 상자형식)의 코드번호 0201형을 적용한다. 2. Bulk형태로 주입, 또는 1kg P.E대 8개 속포장 한다.
봉합 및 결속	1. 봉합 : 골판지상자의 날개봉합은 폭 2mm이상의 평철사로 상·하 양면에 각각 2개 이상씩 봉합하거나 또는 포장용 감테이프프로 상, 하 양면에 봉합한다. (단, 테이프는 상·하 양면을 봉합하여, 옆면에 5cm이상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결속 : KSA 1507 (폴리프로필렌 밴드)에 규정된 제16호 P.P 밴드로 가로 2개소를 결박하거나 또는 연질폴리끈으로 가로 2개소를 두 돌림하여 묶는다.
시험 방법	1. 겹포장 : KSM 7082 (종이 및 판지의 고압파열강도 시험방법) 2. 결속재 : KSA 1507(폴리프로필렌 밴드)의 제6항 시험방법에 따른다. 3. 식품위생법 제12조(식품·첨가물 등의 공전)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포장설계에서
포장 설계 예시 (단위:MM) 적재 모형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1. 상자의 입체도</p>  </div> <div style="width: 45%;"> <p>3. 적재 모형</p> <p>길이 : L 너비 : W 높이 : H 날개 : F</p>  <p>3×5=15상자, T-11형, 99.8%</p> </div> </div> <p>2. 상자의 전개도</p>  <p>(통기공은 직경 20mm)</p>

\* 밥, 20kg, 골판지상자

구 분	포 장 규 격
포장치수(mm)	1. 겉포장 외치수 : 550(길이)×366(너비)×190(높이) 2. 외치수 여유분 : 높이를 5% 범위에서 가감한다.
포장 재료	1. 겉포장, KSA 1502(외부포장용 골판지)에 규정된 이중양면골판지 2종, 파열강도 12kgf/cm <sup>2</sup> 이상, 압축강도 450 kgf 이상, 변형량 20 mm, 수분함량 10±2%, 발수도 R2 이상으로 한다. 2.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포장 방법	1. 겉포장 상자 : KSA 1003(골판지 상자형식)의 코드번호 0201형을 적용한다.
봉합 및 결속	1. 봉합 : 골판지상자의 날개봉합은 폭 2mm이상의 평 철사로 상·하 양면에 각각 2개 이상씩 봉합하거나 또는 포장용 감테이프로 상, 하 양면에 봉합한다(테이프는 상, 하 양면을 봉합하며 옆면에 5cm이상으로 초과하지 못한다) 2. 결속 : KSA 1507(폴리프로필렌 밴드)에 규정된 제16호 PP밴드로 가로 2개소를 결박하거나 또는 연질폴리끈으로 가로 2개소를 두 돌림하여 묶는다.
시험 방법	1. 겉포장 : KSM 7082(종이 및 판지의 고압파열강도 시험방법) 2. 결속재 : KSA 1507 (폴리프로필렌 밴드)의 제6항 시험방법에 따른다. 3. 식품위생법 제12조 (식품·첨가물등의 공전)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포장 설계 예시 (단위:MM) 적재 모형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1. 상자의 입체도</p>  </div> <div style="width: 45%;"> <p>3. 적재 모형</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right: 10px;"> <p>길이 : L</p> <p>너비 : w</p> <p>높이 : H</p> <p>날개 : F</p> </div>  </div> <p>2×3=6상자, T-11형, 99.8%</p> </div> </div> <p>2. 상자의 전개도</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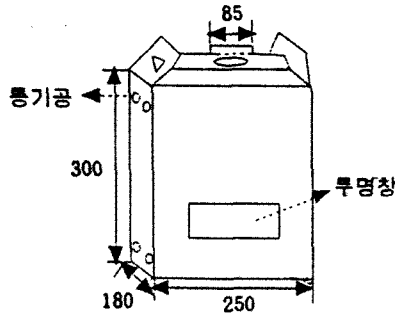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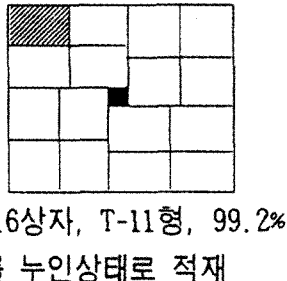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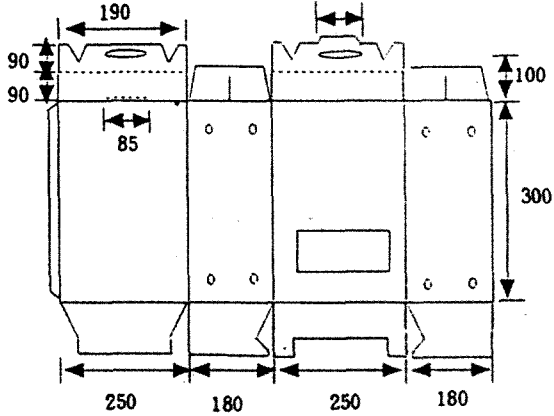
* 밤, 40kg, P.P대	
구 분	포 장 규 격
포장치수(mm)	1. 겉포장의 치수 : $1,000 \pm 10\%$ (길이) $\times$ 575 (너비) 2. 외치수여유분 : 길이를 10% 범위에서 가감한다. 3. 화학사 : $1,350$ (길이) $\times$ 1.5 (굵기)
포장 재료	1. 원단 : KSA 1037 (포대용 폴리올레핀 연신사) 중 폴리프로필렌 연신사 (섬도 900데니어, 인장강도 3.0kgf) 로 직조하여야 하고 직조밀도는 20올/5cm이어야 한다. 또한 통기공을 좋게 하기 위하여 원단의 위사너비는 4-6mm 이내로 1회 이상 접혀진 원사로 제작하여야 한다. 2. 봉합실 : 봉재에 적합한 실로서 인장강도가 4kgf 이상이어야 한다. 3. 화학사 : 올수 21합 이상, 인장강도 20kgf 이상이어야 한다.
포장 방법	1. PP포대 : 밤을 담은 후 화학사로 밤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묶어야 한다.
제대 방법	1. 포대의 측면 및 하단봉재 부분은 2번 접어서 꿰맨다. 2. 봉재선은 끝에서 $15 \pm 2$ mm 가 되도록 꿰맨다. 3. 바늘땀은 4-6mm 간격으로 균일하게 꿰맨다. 4. 원단의 절단은 열 절단하여야 하며 포대의 상단은 위사가 풀리지 않도록 처리한다. 5. 기타 제대방법은 일반 제대방법에 따른다.
시험 방법	1. 직조 밀도 : K나 0511 (직물의 밀도 측정방법) 에 따른다. 2. 섬도 및 인장강도 : KSA 1037 (포대용 폴리올레핀 연신사) 에 따른다. 다만, 시험편을 포대에서 채취한다. 3. 실의 인장강도 : K나 0409 (실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 의 외율법에 따른다. 4. 중량 : 정밀도 0.01g 이상의 능력을 가진 저울의 중량에 따른다. 5. 통기성 : 육안검사에 의한다.
포장 설계 예시 (단위:MM) 및 적재 모형	<P.E필름대의 전개도> 1. 원통형  2. 측면봉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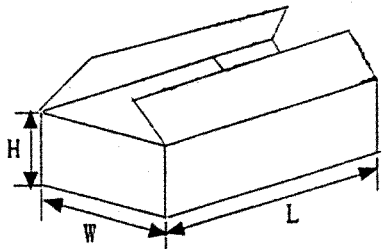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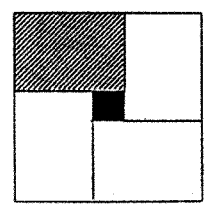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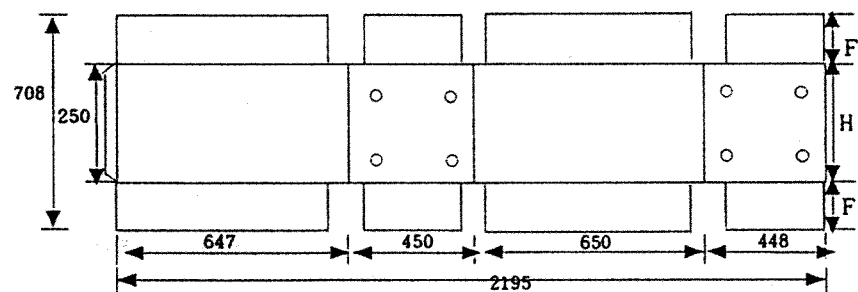
\* 건대추, 200g, P.E대

구 분	포 장 규 격
포장치수(mm)	1. 겉포장 외치수 : 225(길이)×175(너비)×0.03(두께) 2. 외치수 여유분 : 길이를 10% 범위에서 가감한다.
포장 재료	1. PE필름대 : KSM 3509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중 1종인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한다. 2. 모양 : 모양은 튜브상을 사용하지만 부득이 슈트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간명을 완전하게 열봉함 하여야 한다. 3. 품질 : PE필름대의 강도는 두께 0.03mm이상, 인장강도 160kgf/cm <sup>2</sup> 이상, 신장율 200% 이상, 인열강도 55kgf/cm(보통)및 50kgf/cm(접은곳)이상으로 한다. 또한 필름은 무착색의 것을 표준으로 하되, 기타의 색상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4.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포장 방법	1. 내용물을 담은후 윗부분의 봉합은 10mm이상 떨어진 부분을 열봉함하거나, 묶는 경우에는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필름을 1-2회 감은 상태로 묶어야 한다. 2. 열봉함은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열봉함 강도가 필름 필름 인장강도 이상이어야 하며, 끝에서 부터 10mm 떨어진 부분을 열봉함한다.
시험 방법	1. KSM 3001(폴리에틸렌의 기계적성질 시험방법) 2. KSM 3503(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 3. KSM 3509(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4. 식품위생법 제12조(식품·첨가물등의 공전)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포장 설계 (단위:MM)	<p>〈P.E필름대의 전개도〉</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1. 원통형</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2. 측면봉합형</p> </div> </d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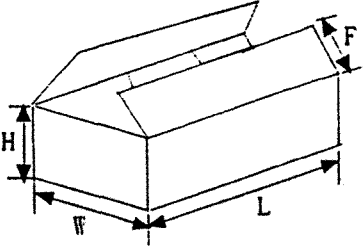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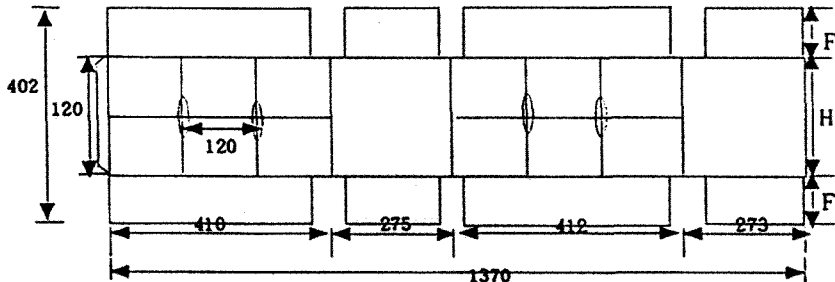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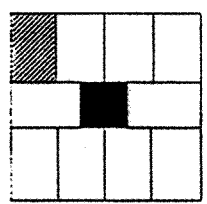
\* 건대추, 4kg, 미장골판지상자

구 분	포 장 규 격
포장치수(mm)	1. 겉포장 외치수 : 250(길이)×180(너비)×300(높이) 2. 외치수 여유분 : 너비를 10% 범위에서 가감한다.
포장 재료	1. 포장재 : KSA 1502(외부포장용 골판지)에 규정된 양면골판지 2종, 파열강도 8kgf/cm <sup>2</sup> 이상, 수분함량 10±2%, 발수도 R2이상으로 한다. 2. 표지 : 옅색인쇄등 방법으로 백색 마닐라판지에 인쇄하여 편면골판지에 합지한다. 3. 골형태 : E골을 표준으로 하지만 거래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A골 및 B골을 사용할 수 있다. 4.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포장 방법	1. 상자형태 : 아래 포장설계와 같이 손잡이가 있는 특수형태를 사용한다. 2. 내용물 : 상자내의 내용물은 Bulk상태로 주입한다.
시험 방법	1. 겉포장 : KSM 7082(종이 및 판지의 고압파열강도 시험방법) KSM 7057 (종이 및 판지의 발수도 시험방법) KSM 7023 (종이 및 판지의 수분 시험방법) 2. 식품위생법 제13조 (식품·첨가물 등의 공전)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포장 설계 예시 (단위:MM) 및 적재 모형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1. 상자의 입체도</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3. 적재 모형</p>  </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p>2. 상자의 전개도</p>  </d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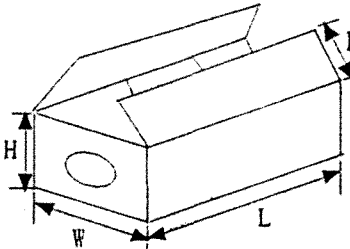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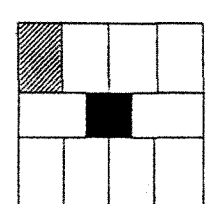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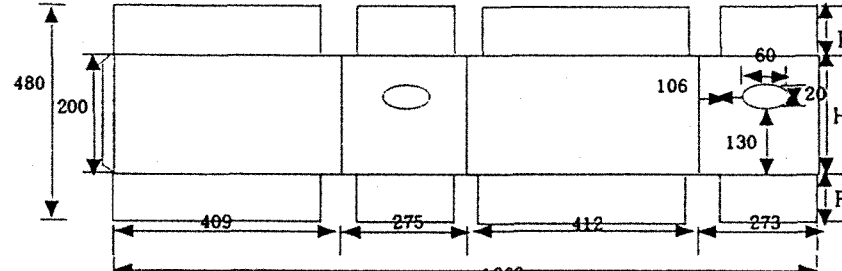
\*건대추, 20kg(P.E 200g×100, 2kg상자×10), 골판지상자

구 분	포 장 규 격
포장치수(mm)	1. 겉포장의치수 : 650(길이)×450(너비)×250(높이) 2. 외치수여유분 : 높이를 10% 범위에서 가감한다.
포장 재료	1. 겉포장 : KSA 1502(외부포장용 골판지)에 규정된 이중양면골판지 2종, 파열강도 10kgf/cm <sup>2</sup> 이상, 압축강도 450kgf이상, 변형량 20mm, 수분함량 10±2%, 발수도 R2이상으로 한다. 2. 식품위생법에 다른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포장 방법	1. 겉포장상자 : KSA 1003(골판지 상자형식)의 코드번호 0201형을 적용한다. 2. Bulk 형태로 주입, 또는 200g PE대 100개를 속포장, 또는 2kg상자 10개를 속포장 한다.
봉합 및 결속	1. 봉합 : 골판지상자의 날개봉합은 폭 2mm이상의 평 철사로 상·하 양면에 각각 2개 이상씩 봉합하거나 또는 포장용 감테이프로 상, 하 양면에 봉합한다. (테이프는 상, 하 양면을 봉합하며 옆면에 5cm이상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결속 : KSA 1507 (폴리프로필렌 밴드)에 규정된 16호 PP밴드로 가로 2개소를 결박하거나 또는 연결폴리끈으로 가로 2개소를 두 돌림하여 묶는다.
시험 방법	1. 겉포장 : KSM 7082 (종이 및 판지의 고압파열강도 시험방법) KSA 1012 (포장화물 및 용기의 압축시험 방법) KSM 7057 (종이 및 판지의 발수도 시험) KSM 7023 (종이 및 판지의 수분 시험) 2. 결속재 : KSA 1507 (폴리프로필렌 밴드)의 제6항 시험방법에 따른다. 3. 식품위생법 제12조 (식품·첨가물 등의 공전)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포장 설계 예시 (단위:MM) 적재 모형	1. 상자의 입체도 <span style="float: right;">3. 적재 모형</span>  <div style="float: right; margin-left: 20px;">                         길이 : L                          너비 : w                          높이 : H                          날개 : F                          4상자, T-11형, 96.7%                     </div>  2. 상자의 전개도 

\* 생표고버섯, 2kg, 골판지상자

구 분	포 장 규 격
포장치수(mm)	1. 겹포장외치수 : 412(길이) × 275(너비) × 120(높이) 1. 외치수여유분 : 높이를 10% 범위에서 가감한다.
포장 재료	1. 겹포장 : KSA 1502 (외부포장용 골판지)에 규정된 양면 골판지 1종, 파열강도 6.5 kgf/cm <sup>2</sup> 이상, 압축강도 200 kgf 이상, 변형량 20 mm, 수분함량 10±2%, 발수도 R2이상으로 한다. 2.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포장 방법	1. 겹포장상자 : KSA 1003 (골판지 상자형식)의 코드번호 0201형을 적용한다. 2. Bulk형태로 주입한다.
봉합 및 결속	1. 봉합 : 골판지상자의 날개봉합은 폭 2mm이상의 평철사로 상·하 양면에 각각 2개 이상씩 봉합하거나 또는 포장용 감테이프로 상, 하 양면에 봉합한다. (테이프는 상, 하 양면을 봉합하며 옆면에 5cm이상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결속 : KSA 1507 (폴리프로필렌 밴드)에 규정된 제16호 PP밴드로 가로 2개소를 결박하거나 또는 연질폴리끈으로 가로 2개소를 두 돌림하여 묶는다.
시험 방법	1. 겹포장 : KSM 7082 (종이 및 판지의 고압파열강도 시험방법) KSA 1012 (포장화물 및 용기의 압축시험 방법) KSM 7057 (종이 및 판지의 발수도 시험) KSM 7023 (종이 및 판지의 수분 시험) 2. 결속재 KSA 1507 (폴리프로필렌 밴드)의제6항 시험방법에 따른다. 3. 식품위생법 제12조 (식품·첨가물 등의 공전)의 기수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포장 설계 예시 (단위:MM) 적재 모형	1. 상자의 입체도  2. 상자의 전개도  3. 적재 모형  길이 : L 너비 : W 높이 : H 날개 : F 2×4+2=10상자 T-11형, 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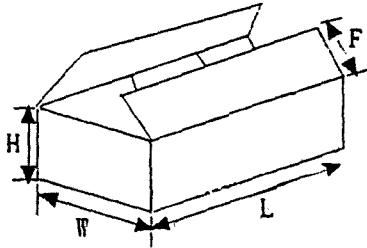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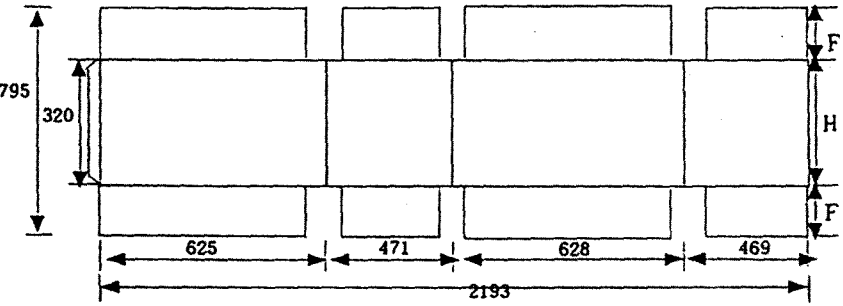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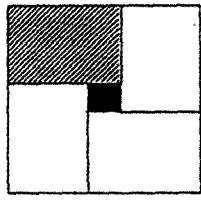
\* 생표고버섯, 4kg, 골판지상자

구 분	포 장 규 격
포장치수(mm)	1. 겹포장외치수 : 412(길이)×275(너비)×200(높이) 2. 외치수여유분 : 높이를 10% 범위에서 가감한다.
포장 재료	1. 겹포장 : KSA 1502 (외부포장용 골판지)에 규정된 양면 골판지 2종, 파열강도 8kgf/cm <sup>2</sup> 이상, 압축강도 250kgf이상, 변형량 20mm, 수분함량 10±2%, 발수도 R2이상으로 한다. 2.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포장 방법	1. 겹포장상자 : KSA 1003 (골판지 상자형식)의 코드번호 0201 형을 적용한다. 2. Bulk형태로 주입한다.
봉합 및 결속	1. 봉합 : 골판지상자의 날개봉합은 폭 2mm이상의 평 철사로 상·하 양면에 각각 2개 이상씩 봉합하거나 또는 포장용 감테이프로 상, 하 양면에 봉합한다. (테이프는 상, 하 양면을 봉합하며 옆면에 5cm이상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결속 : KSA 1507 (폴리프로필렌 밴드)규정된 제16호 PP밴드로 가로 2개소를 결박하거나 또는 연질폴리끈으로 가로 2개소를 두 돌림하여 묶는다.
시험 방법	1. 겹포장 : KSM 7082 (종이 및 판지의 고압파열강도 시험방법) KSA 1012 (포장화물 및 용기의 압축시험 방법) KSM 7057 (종이 및 판지의 발수도 시험) KSM 7023 (종이 및 판지의 수분 시험) 2. 결속재 : KSA 1507 (폴리프로필렌 밴드)의 제6항 시험방법에 따른다. 3. 식품위생법 제12조 (식품·첨가물 등의 공전)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포장 설계 예시 (단위:MM) 적재 모형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1. 상자의 입체도</p>  </div> <div style="width: 45%;"> <p>3. 적재 모형</p> <p>길이 : L 너비 : w 높이 : H 날개 : F</p>  <p>2×4=10상자, T-11형, 93.6%</p> </div> </div> <p>2. 상자의 전개도</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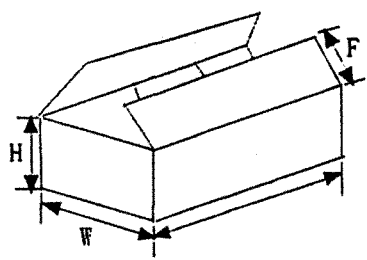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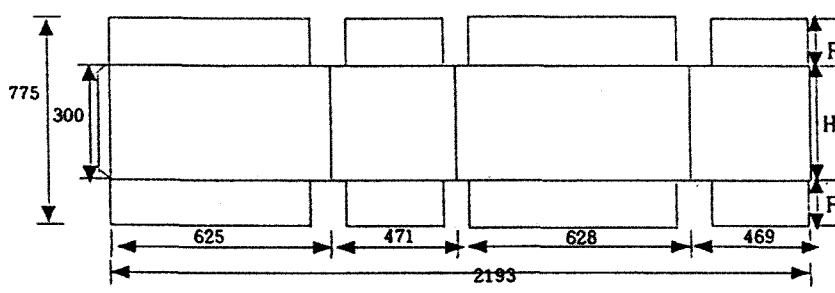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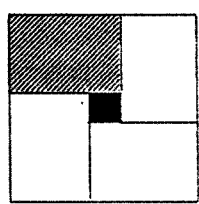


\* 마른 취나물, 10kg(P. E대 200g×50), 골판지상자

구 분	포 장 규 격
포장치수(mm)	1. 겉포장 외치수 : 628(길이)×471(너비)×320(높이) 2. 외치수 여유분 : 높이를 10% 범위에서 가감한다.
포장 재료	1. 겉포장 : KSA 1502(외부포장용 골판지)에 규정된 이중양면골판지 1종, 파열강도 10kgf/cm <sup>2</sup> 이상, 압축강도 300kgf이상, 변형량 20mm, 수분함량 10±2%, 발수도 R2 이상으로 한다. 2.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포장 방법	1. 겉포장상자 : KSA 1003 (골판지 상자형식)의 코드번호 0201형을 적용한다. 2. 200g PE대 50개를 속포장한다.
봉합 및 결속	1. 봉합 : 골판지상자의 날개봉합은 폭 2mm 이상의 평 철사로 상·하 양면에 각각 2개 이상씩 봉합하거나 또는 포장용 감테이프로 상, 하 양면에 봉합한다. (테이프는 상, 하 양면을 봉합하며 앞면에 5cm 이상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결속 : KSA 1507 (폴리프로필렌 밴드)에 규정된 제16호 PP밴드로 가로 2개소를 결박하거나 또는 연질폴리끈으로 가로 2개소를 두 돌림하여 묶는다.
시험 방법	1. 겉포장 : KSM 7082 (종이 및 판지의 고압파열 강도 시험방법) KSA 1012 (포장화물 및 용기의 압축시험 방법) KSM 7057 (종이 및 판지의 발수도 시험) KSM 7023 (종이 및 판지의 수분 시험) 2. 결속재 : KSA 1507 (폴리프로필렌 밴드)의 제6항 시험방법에 따른다. 3. 식품위생법 제12조(식품·첨가물 등의 공전)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포장 설계 예시 (단위:MM) 적재 모형	1. 상자의 입체도  2. 상자의 전개도  3. 적재 모형  길이 : L 너비 : W 높이 : H 날개 : F 4상자, T-11형, 97.8%



\* 마른 취나물, 5kg(P. E대 100g×50), 골판지상자

구 분	포 장 규 격
포장치수(mm)	1. 겹포장 외치수 : 628(길이)×471(너비)×300(높이) 2. 외치수 여유분 : 높이를 10% 범위에서 가감한다.
포장 재료	1. 겹포장 : KSA 1502(외부포장용 골판지)에 규정된 양면골판지 2종, 파열강도 8kgf/cm <sup>2</sup> 이상 압축강도 250kgf이상, 변형량 20mm, 수분함량 10±2%, 발수도 R2 이상으로 한다. 2.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포장 방법	1. 겹포장상자 : KSA 1003 (골판지 상자형식)의 코드번호 0201형을 적용한다. 2. 100g PE대 50개를 속포장한다.
봉합 및 결속	1. 봉합 : 골판지상자의 날개봉합은 폭 2mm 이상의 평 철사로 상·하 양면에 각각 2개 이상씩 봉합하거나 또는 포장용 감테이프프로 상, 하 양면에 봉합한다. (테이프는 상, 하 양면을 봉합하며 앞면에 5cm 이상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결속 : KSA 1507 (폴리프로필렌 밴드)에 규정된 제16호 PP밴드로 가로 2개소를 결박하거나 또는 연질폴리끈으로 가로 2개소를 두 돌림하여 묶는다.
시험 방법	1. 겹포장 : KSM 7082 (종이 및 판지의 고압파열 강도 시험방법) KSA 1012 (포장화물 및 용기의 압축시험 방법) KSM 7057 (종이 및 판지의 발수도 시험) KSM 7023 (종이 및 판지의 수분 시험) 2. 결속재 : KSA 1507 (폴리프로필렌 밴드)의 제6항 시험방법에 따른다. 3. 식품위생법 제12조(식품·첨가물 등의 공전)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포장 설계 예시 (단위:MM) 적재 모형	1. 상자의 입체도  2. 상자의 전개도  3. 적재 모형  길이 : L 너비 : W 높이 : H 날개 : F 4상자, T-11형, 97.8%